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6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6월 5일

3. 제안 이유
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(2002.1.14 개정, 법률 제6598호)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

4. 주요 골자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

5. 검토 의견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

-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- 2002. 1. 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바뀌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

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

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

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

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 | 조지현